

안경테표면처리센터 전대 계약서

계약번호: 0000-00-00

[재산의 표시]

소재지	지목	구조	계약면적	(단위 : ㎡)		비고
				전용	공용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166	공장용지	철골 콘크리트				

대구광역시(이하 “대구시”)와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간 체결된 『안경테표면처리센터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에 의거하여 위 재산에 대해 “진흥원”을 “전대인”으로 하고, “입주업체”를 “전차인”으로 하는 전대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계약목적) 본 전대계약은 안경테표면처리 분야의 경쟁력 강화 및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진흥원”이 “대구시”로부터 관리를 수탁받은 안경테표면처리센터(이하 “센터”) 시설을 전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차인”은 안경테표면처리 분야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 목적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으로 하며, 1차 계약 종료 후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고, 최초 입주 5년 이후 1회에 한해 계약을 갱신 할 수 있다.(최장 10년까지 입주 가능)

제3조(사용료) ① 최초년도 사용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되고, 2차년도 이후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제31조의2에 의거 산출된 임대료에 관리비를 부가하여 산정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최초입찰 후 2년 ~ 5년, 매년 연장 시】

⇒ 2년, 3년, 4년, 5년차 계약 연장 시

⇒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5년 도래 후, 최초 갱신에 따른 6년 ~ 10년】

⇒ 다음 2가지 금액 중 큰 금액으로 계약

-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 2)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연간 대부료*) ×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재산가격)

*대부료 :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료를 감경받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를 말한다

②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5조에 의거, 사용료를 분할 납부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보증금(연간 사용료의 50%)을 현금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보험증권을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100만원 초과> 3월 이내 2회 분납

<200만원 초과> 6월 이내 4회 분납

<300만원 초과> 12월 이내 12회 분납

회차	사용료		납부기한	
	분납금	이 자	최초 연도	2차 연도 이후
1				
2				
3				
4				
5				
6				
	사용료의 분할 횟수별 분할 고지	납입고지서 발행일 기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 적용	분할 횟수별 별도 고지	2차 연도 이후 분할 횟수별 별도 고지

③ 제1항에 따라 0000년도 전대기간(0000.00.00. ~ 0000.00.00.)까지 사용료는 아래와 같이 납부도록 한다.

대상호실	사용료	부가가치세	납부 총액	납부방법
000호				

제4조(사용료 및 연체료 납부) ①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5조에 의거 최초연도에는 사용시작일 이전으로 하고, 그 기한은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차년도부터는 “전대인”의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② 사용료는 “전대인”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명시된 연체료를加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계약을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분에 대하여는 제4조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보험증서 제출) ① “전차인”은 본 계약 기간 중 “전대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증서를 “전대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만약 “전차인”이 상기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화재, 도난, 시설 및 인명 피해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차인”은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7조(전대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전대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전대재산의 부과금) ① 전대재산 사용에 필요한 부대시설 및 집기, 비품 등은 “전차인”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 및 계약 취소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전대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의 각종 공과금)은 “전차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3개월 이상 체납한 때에는 제10조(전대계약의 취소)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전차인의 행위제한) “전차인”은 “전대인”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① 사용 또는 수익 목적을 변경하는 것

② 전대 받은 재산을 다시 빌려주거나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제10조(전대계약의 취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전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시정이 가능한 경우 시정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① 전대재산이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 ② 전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계약조건에 위배한 때
- ③ 전대재산을 “전대인”의 승낙 없이 임의로 다시 빌려주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 ④ 전대재산 사용 중 진동, 소음, 악취, 매연 및 유해물질 배출 등으로 타 입주업체에게 피해를 주거나 이로 인해 민원이 발생할 경우
- ⑤ 사용료 및 공과금(전기세, 수도세, 폐수처리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 ⑥ 계약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명시된 내용대로 전대재산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분기별 임대호실 시찰)
- ⑦ 요청한 보험증권(증서)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11조(전대계약 취소 시 손해배상) “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취소함으로써 “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전대인”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전대계약의 취소 요청) “전차인”이 본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취소일자로부터 2주 전에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원 제출일로부터 2주 이후로 취소일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사용재산 반환) “전차인”은 계약기간이 종료되었거나 계약취소로 전대 받은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전대인”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전대 받은 재산의 원상복구가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복구 불필요에 대한 “전대인”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원상복구 비용 부담) “전차인”이 제13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전대인”이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변상금 징수) “전차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전대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무단점유)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제16조(전차인의 손해배상 책임) “전차인”이 본 계약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계약조건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전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지시감독) “전차인”은 본 전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전대인”的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전대인”은 수시로 계약사항의 준수상태를 점검하여 위반 시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통지의무) “전차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대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① 상호 및 대표자 등 주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 ② 사업자등록증에 관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 ③ 계약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

제19조(비밀유지의무) “전차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전대인”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본 전대계약의 이행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사전 승낙 없이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이는 전대기간 종료 이후에도 유효하다.

제20조(분쟁) ① 본 계약사항에 대하여 쌍방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한 해결을 위해 상호 성실히 노력한다.

② 본 계약 관련 일체의 소송은 전대재산 목적물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1조(관리규정) ① “전대인”은 본 계약에 의거 “전차인”의 재산보전과 전대재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규정 및 세칙을 제정, 시행, 개폐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관리규정은 이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된다.

②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상호 간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및 상 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

0000년 00월 00일

대구광역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진홍원 : 한국안광학산업진홍원 원장 김 종 한 (인)

사업자등록번호 : 504-82-09945

사용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전 대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전대재산의 표시) “전대인”은 “전차인”에게 계약서에 명시된 자산에 입주를 허가하고, “전차인”은 이를 사용한다.

제2조(용도제한) “전차인”은 위 전대재산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하여 전차하며, “전대인”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전대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3조(선관주의 의무) “전차인”은 전대재산 및 현관, 휴게실, 복도, 계단, 승강기, 청소 도구실, 화장실 등 기타 공용사용 부분을 사용할 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제4조(전대재산 내의 조작 및 설비의 신설) ① “전차인”은 재산에 필요한 부대시설 및 영업에 필요한 집기, 비품 등은 “전차인”의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전대인”의 사전 동의를 얻어 “전차인”의 비용으로 아래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전대인”은 물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공에 관한 지휘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가. 전대재산 내 실내장식, 칸막이, 선전물 등의 부착 또는 변경 행위

나. 기존 설치된 공급 외 강전, 약전 전력의 설치 및 이전, 전화가설, 급·배수 등 설비의 신설, 증설, 이전 또는 변경 행위

② “전차인”은 제1항에 근거하여 “전차인”이 부담한 유익비* 등 모든 비용의 반환청구권을 포기하며 후일 명도 시에는 “전차인”的 자비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유익비(有益費) : 필요비는 아니지만 물건을 개량하여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비용

③ “전차인”이 전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전대인”이 인정할 수 있는 원상복구가 이행되지 못했을 경우에 “전대인”은 임대보증금에서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제5조(수선) ① 전대재산의 파손, 마모, 퇴색된 벽, 천장, 바닥 등의 수선(도장 포함) 비용은 “전차인”的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전차인”的 의무나 책임을 소홀히 하여 건물 유지 보존상 “전대인”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전대인”은 우선 필요한 수선 또는 조치를 하고 “전차인”에게 그 실비를 청구하며, “전차인”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설물의 소모품 교체는 “전차인” 부담으로 한다.

제6조(권리양도, 전대 등의 금지) “전대인”과 “전차인”은 전대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며, “전차인”은 전대재산의 전부 혹은 일

부를 전대하지 못한다.

- 제7조(전대재산의 사용제한)** ① “전차인”은 “전대인”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전차인” 이 외에 제3자로 하여금 전대재산을 사용하게 하거나 명의를 계시할 수 없다.
② “전차인”은 전대재산 내에 주거를 설정할 수 없다.
③ “전대인”은 보수, 점검 등 필요에 의해 건물 사용 및 시설 운전을 제한 할 수 있다.
④ “전차인”은 건물 내에 각종 자동판매기(커피, 음료 등)를 설치할 수 없다.

- 제8조(재산보호 등)** ① “전차인”의 재산에 관한 적절한 안전관리는 “전차인”의 책임이며, “전대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화재, 도난 등 전대재산 내에서 발생하는 “전차인”의 여하한 손해에 대해서도 “전대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전차인”은 전대재산 및 공용부분을 사용할 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③ “전차인” 및 그 사용인, 방문객은 “전대인”이 설정하는 전대재산과 제시설의 사용 관리에 관한 제 지침 및 세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출입권한) “전차인”은 아래 각호와 관련하여 “전대인”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 ① 전대재산 보전을 위하여 출입하는 행위(보수, 점검, 청소 등)
- ② 방화, 방범, 구호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조치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행위
- ③ 전대기간 종료 전 타 임차 희망자에게 임대공간을 보여주기 위해 출입하는 행위

- 제10조(보안)** ① 입주자별 무인경보 시스템은 센터에서 기본 설치하며, 입주자가 개별로 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전대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전대 받은 시설에 대한 도난방지 등 보안에 관한 사항은 “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하며, 보안시설 미비로 인한 도난사고 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전차인”이 져야 한다. “전차인”은 자신이 점유하는 전유부분 내에서 발생한 도난사고에 대하여 “전대인”에게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 기타 법률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③ 전기 등 화재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전대인의 면책사항)** ① “전대인”은 천재지변, 전쟁, 사변, 소요, 폭동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전대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전차인”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대·내외적으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전차인”이 임차물건을 관리, 변경, 개조함으로 인하여 제 서비스의 부족 및 공동 사용부분의 사용 정지에 관해서는 “전대인”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12조(전차인의 의무사항)** ① “전차인”의 주소, 상호, 대표자, 영업 목적, 자본금 기타 상업등기사항 또는 신분상의 중요한 변경이 있을 때는 “전차인”은 지체 없이 서면으로 “전대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차인”은 “전대인”이 요청할 시 회사의 재무상태, 매출, 고용인원 및 기술개발실적 등 경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차인”은 전대재산과 관련한 사업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절차를 자체 없이 이행하여야 하며, 전대재산 내 배치된 인력의 근무조건, 산업재해 보상 등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을 책임을 져야 한다.

제13조(전대인의 처분권리) ① “전차인” 또는 그 대리인이 한국 내 부재중임을 이유로 전대기간 중 의무이행책임을 거절할 수 없으며, 부재중 계약이 만료될 때에는 “전대인”은 전대재산의 소유권을 회복하고, “전차인”的 재산을 창고나 타 장소에 이관할 수 있으며 모든 채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못하고 계약이 만료 시에는 만료 후 1개월 이내 “전차인”으로부터 자기 소유재산 처분 및 취급에 대하여 하등의 요구가 없을 시 해당재산과 소유권을 “전대인”이 정하는 매각 절차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매각에 있어서 “전대인”은 해당 재산의 운반 및 보관 창고료를 포함한 미이행된 채무를 우선변제 받을 권리를 보유한다.

제14조(손해배상) ① “전차인” 또는 그 사용인과 그의 고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전대인” 및 타 전차인 등 제3자의 신체나 재산상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전차인”은 이를 자체 없이 “전대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손해배상의 산정은 손해가 발생한 당시의 시가에 의거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제15조(전대인의 계약해지권) ① “전차인”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전대인”은 계약해지 전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전대한 호실을 폐쇄할 수도 있다.

- 가. 계약 체결 후 지정된 임대료, 관리비 및 제 비용의 납부를 3개월 연속 미납하거나,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입주를 하지 않을 경우
- 나. 국세체납, 부도, 기타 채무로 인하여 재산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받거나 또는 강제집행, 파산, 회사정리절차 개시 또는 경매절차 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
- 다. 발행, 배서, 지급 보증한 어음, 수표 등이 부도 처리되는 경우
- 라. 운영하는 사업내용이 제출한 사업계약서상의 내용과 다를 경우
- 마. 기존 시설물의 원형 변경행위 및 타 업체에 위해가 되는 행위 등
- 바. 각종 적정설계기준(소음, 진동, 하중)을 초과하여 기계 및 장비를 반입 설치하는 경우
- 사. 공용시설 및 면적을 부당하게 점거하여 사용하는 경우
- 아. 관리권자가 정하는 제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자. 기술도용을 비롯한 부당거래행위 등으로 센터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경우
- 차. 기타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전대인”은 “전차인”에게 해지 사유와 해지 예정일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지 예정일 2주 전까지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전차인”은 제 2항의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이 정당하다는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전대인”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⑤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하여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⑥ “전차인”이 전대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퇴거 희망 2주 전까지 “전대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전대인”的 서면에 의한 동의로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단 “전차인”은 퇴거 희망일 이후에는 전대건물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료는 『전대 계약서』 제 5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약으로 인하여 “전차인”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전대인”은 이를 보장하지 아니한다.

제16조(인도 및 원상복구) ① 이 계약이 종료된 때에는 “전차인”이 종료일 이내에 “전차인” 소유물 및 재산을 반출하여야 하며, “전대인”에게 전대재산의 전부를 양도하여야 한다.

② “전차인”은 “전대인”이 지원한 시설분야를 제외한 “전차인”的 필요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 칸막이 기타 구조상의 변조시설을 “전차인”的 비용으로 철거하여 원 계약체결 당시의 원상으로 전대계약 종료일까지 복구하여야 한다.

③ “전차인”的 사정으로 인해 “전차인”的 소유물 및 재산을 반출하지 못하거나 전대재산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인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 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실제로 인도, 복구된 날까지 통상 임대료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금액 및 지체상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전대기간과 관련하여 전대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경우 필요 시 “전차인”이 “전대인”에게 철거비용을 납입하는 것으로 갈음 할 수 있다.

제17조(협의회 구성) ① 공동방지시설인 폐수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전차인”은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기업 2개사 이상 입주 시 공동폐수처리시설 운영 협의회를 구성하여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전차인”은 운영규정을 준수하여 폐수처리시설이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8조(위탁운영) “전차인”은 폐수처리시설의 관리 운영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에 의거 자격이 있는 자에게 위탁 관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비용의 납부) “전차인”은 공동폐수처리시설 운영 협의회에서 규정된 방법으로 사용량에 따라 책정한 폐수처리시설운영 및 폐수처리비용을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전대인”은 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 “전차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 서류를 조사할 수 있으며 “전차인”은 이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폐수의 배출) ① 폐수를 배출하는 “전차인”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수를 처리시설에 유입시켜야 한다.(처리불가폐수 제외) 단, 공동폐수처리시설 운영 협의회 및 “전대인”的 요구에 따라 “자가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할 수 있다.

② “전차인”은 유입폐수를 원수의 폐수 배출 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

단위: mg /ℓ

구 분	PH	TOC	SS	N-H	ABS
원 수	7	280	100	10	5
배출허용기준(“나” 지역)	5.8~8.6	75	120	5	5
방 류 수(설계기준)	6~7	30	20	3	3

③ 제1항에 따라 자가폐수처리시설 설치 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의 자격을 갖춘 업체를 통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제22조(환경문제 분담) ① 허용기준 초과 및 무단방류 등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발생 시 공동폐수처리시설 운영 협의회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 및 분담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근거하여 각종 환경문제 발생에 따른 책임은 폐수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전차인”에게 있으며, “전대인”에게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23조(배출 제한) ① “전차인”은 폐유류와 분뇨 및 오수가 폐수에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처리불가폐수는 공동시설에 유입할 수 없다.

③ “전차인”的 각종 유량계 임의 조작이나 무단 방류 시에 “전대인”은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한다.

제24조(배출시설의 변경) “전차인”은 배출시설 신설, 증설, 축소 등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인·허가를 받기에 앞서 공동폐수처리시설 운영 협의회 대표자 및 “전대인”과 협의하여, 변경으로 인한 폐수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추가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당해 “전차인”的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시설물은 “전차인”이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26조(사용의 제한) ① 센터는 재해,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필요한 경우에는 폐수처리시설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는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 통지할 수 있다.

제27조(주차장관리) ① “전대인”은 “전차인”的 전대재산의 사용 호실 수를 기준으로 “전차인”的 주차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전차인”은 “전대인”이 지정해주는 주차장 수에 따라 차량을 무료로 주차할 수 있다.

② 센터 주차는 사용 호실당 1대로 제한하며 주차장 이용 규정에 동의한 업체에 한하여 주차권을 등록한다.

③ “전차인”的 주차는 주차장 내 수용 가능한 차량에 한하며, 주차 권리를 전대하지 못한다.

제28조(환경관리) ① 전대재산 주위 환경은 늘 깨끗이 관리하여야 하며, 공동사용 공간에 대하여는 주변 사무실 사용자와 청소를 분담하는 등 청결한 시설 유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영업상 발생한 쓰레기는 원인자 책임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만약 수거 처리하지 않을 때에는 센터에서 처리하고 그 처리비용은 원인자 부담하여야 한다.

③ 공동사용 공간에 임의로 물건 또는 짐을 배치하였을 경우, 통보 없이 철거할 수 있다.

제29조(관리인) ① “전대인”은 전대재산 및 건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전문 업체인 제3자를 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관리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전대인”的 대리인으로서 “전대인”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30조(관리규정 등) ① “전대인” 또는 관리인이 이 계약에 의거 “전대인”的 재산보전과 전대재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규정 및 세칙을 제정, 시행, 개폐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관리규정은 이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된다.

②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상호 간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및 상 관례에 따라 상호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대재산 소재지 관할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④ 사용자는 안경테 표면처리센터 각종 관리규정 등을 준수해야 하며, 시설 내 업무 분위기를 어지럽히고 각종 분쟁을 일으키는 등 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판단될 시 전대계약을 취소하고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31조(기타)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에 그 효력이 발생된다.

0000년 00월 00일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장